

서울특별시 마포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 6. 14.
행정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1. 5. 27. 김영미 의원 외 9인

나. 회부일자: 2021. 5. 27.

다. 상정일자: 제249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건설위원회(2021.6.14.)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채우진 의원】

가. 제안이유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거하여 마포구 관내 중소기업자간 협업 및 공동 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하여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위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1) 중소기업협동조합의 범위(안 제2조)
- 2)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 3)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 촉진, 경영 지원 등(안 제5조, 제6조)
- 4)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 지원(안 제8조)
- 5) 권한의 위탁(안 제9조)

3. 검토보고(전문위원 최국모)

- 동 조례안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거 마포구 관내 중소기업자간

협력과 공동사업 추진을 위해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제안되었으며 본칙 10개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 주요내용으로는

- 안 제3조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4조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를 각각 규정하고 있고,
- 안 제5조 ~ 제8조까지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 촉진, 경영 및 교육 훈련 지원, 판로촉진, 공동사업 지원, 권한의 위탁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현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현황을 보면 광역단체 16, 기초단체 19 등 총 35곳에서 동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으며, 마포구 내의 중소기업협동조합은 망원동월드컵시장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 등 3개의 협동조합이 소재하고 있으며, 이들 조합에 95개의 중소기업·소상공인이 등록되어 기업 활동 중임.

○ 본 조례가 제정되면 마포구 관내 중소기업자간 협업과 공동사업 추진을 위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결성 등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되며 조합 지원근거가 마련됨으로써 중소기업의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없음

【참고자료 1】

□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 현황

광역자치단체 (16)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기초자치단체 (22)	서울시 노원구, 포천시, 고양시, 시흥시, 안산시, 파주시, 충주시, 청주시, 천안시, 전주시, 군산시, 여주시, 창원시, 남양주시, 남원시, 대구 북구, 대전 동구, 대전 서구, 부천시, 성남시, 정읍시, 제천시,

【참고자료 2】

□ 마포구 소재 중소기업협동조합 현황

연번	조합명	조합원 수	설립연월
1	서울공가공식품사업협동조합	16	1986.02.
2	망원동월드컵시장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	49	2004.04.
3	서울경인두부류제조협동조합	30	2007.06.

【참고자료 3】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9조(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협력 의무) 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의 사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하며, 정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는 그 시설을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가 이용하려는 때에는 다른 자에 우선하여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운영, 중소기업 제품의 공동전시·공동판매 등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및 중앙회에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인 부지나 시설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 ③ 중앙회 회장은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의 발전에 관하여 정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135조(보조금) ① 주무관청은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중앙회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지역 사회를 개발하기 위하여 관할 구역에 있는 중앙회 지회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중앙회를 통하여 보조할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그 예산의 범위에서 조합, 사업조합 또는 연합회의 품질 규격의 제정, 검사 사업, 유통 구조의 개선 사업,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10.>